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

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 강민국·박성민·최형두

김태호 · 서일준 · 박덕흠

김도읍 • 이인선 • 윤한홍

서천호 • 박대출 • 이상휘

조승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,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 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7호),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8조의4 (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등의 감면)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.
 - 1.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 - 2.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.
- 제78조의5(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) ① 「우주개발 진흥법」

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(이하 이 조에서 "투자진흥지구"라 한다)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,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다)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(이하 이 조에서 "감면한도"라 한다)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
- 2.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
 - 가.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 "감면 대상사업장"이라 한다)의 상시근로자 수 × 100만원
 - 나.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
-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

- 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.
-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⑦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
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8조의4의 신설
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8조의5의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8조의4 (우주산업클러스터 및
	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
	흥지구에 대한 부동산취득세
	등의 감면)「우주개발 진흥
	법」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
	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
	주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	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
	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
	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
	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	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
	<u> 징한다.</u>
	1.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
	하거나 입주를 위해 취득한
	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
	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
	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
	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
	세를 추징한다.
	2.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
	하거나 입주를 위하여 취득한
	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

<신 설>

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우주항 공복합도시를 조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 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 한다.

제78조의5 (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 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감면) ① 「우주 개발 진흥법」 제23조의2에 따 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(이하 이 조에서 "투자진흥지구"라 한다)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,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다)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 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

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(이하 이 조에서 "감면한도"라 한다)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 계액의 100분의 5
- 2.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금액
 - 가.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진 흥지구 사업장(이하 이 조 에서 "감면대상사업장"이라 한다)의 상시근로자 수 × 100만원
 - <u>나.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</u> 0분의 2
-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

- 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 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 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.
-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한다.
-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①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 3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 액을 추징한다.